#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9

발의연월일: 2020. 7. 10.

발 의 자:양경숙・이용우・고용진

이동주・강병원・박홍근

이학영 · 조정식 · 정청래

이원택 · 김홍걸 의원

(11일)

###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요가 급증하였음. 수요 증가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을 매점매석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있음.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례 또한 적발되고 있음. 코로나19의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6월까지 집계된 불공정행위 단속 건수는 777건이며 적발물량은 509만708개에 달함.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활방역의 필수품인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의 매점매석 및 되팔기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시장교란행위임. 현행법은 긴급구습조정조치와 매점매석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행정지도 수준의 제재만가능한 수준이어서 단속을 통해 확보한 마스크가 재유통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실정임. 이에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몰수와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벌칙을 강화하는 등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를 비롯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그리고 매점매석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함(안제2조의2제1항).
- 나. 같은 품목에 대하여 최고가격 및 매점매석 금지 위반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최고가격을 위반한 때에 준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 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반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 라. 매점매석 금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반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 마.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을 매각·공매·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를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
- 2.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
- 3.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다만, 같은 품목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거래한 가격에서 매입단가를 뺀 금액
- 제25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관련된 물품으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몰수한다.
-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금지의 위반과 관련된 물품으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몰수한다.
-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몰수물품의 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제25조제3항 및 제26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한 물품(이하 "몰수물품"이라 한다)을 매각·공매·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물품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매각·공매 대금에서 매각·공매 비용을 뺀 대금은 국고로 납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물품의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                  | 제2조의2(과징금) ①         |
| 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정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
| 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                     | <u>에 해당하는 자에게는</u>   |
| 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 <u>,</u>             |
| <u>이득을 얻은 자에게는</u> 과징금              |                      |
| 을 부과한다.                             |                      |
| <u>&lt;신 설&gt;</u>                  | 1.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
|                                     |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
|                                     |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      |
|                                     | 을 얻은 자               |
| <u> &lt;신 설&gt;</u>                 | 2.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   |
|                                     | 조정조치를 위반하여 부당한       |
|                                     | 이득을 얻은 자             |
| <u>&lt;신 설&gt;</u>                  | 3. 제7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
|                                     | 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
|                                     | <u>얻은 자</u>          |
| ② 제1항에 따른 <u>과징금은 실</u>             | ② <u>과징금은 다</u>      |
| 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    |
|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                     | 로 한다. 다만, 같은 품목에 대   |
| <u>으로 한다</u> . <u>&lt;단서 신설&gt;</u> | 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 동   |
|                                     | 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
|                                     |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u>&lt;신 설&gt;</u>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    |

## <신 설>

③ ~ ⑤ (생 략)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u>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   | 우: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    |
|---|---------------------|
|   | 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
|   | <u>뺀 금액</u>         |
|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
|   | 하는 경우: 실제로 거래한 가    |
|   | 격에서 매입단가를 뺀 금액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제 | 25조(벌칙) ①           |
|   |                     |
|   | <u>3년</u> <u>1</u>  |
|   | <u>억원</u>           |
|   | ② (현행과 같음)          |
|   |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    |
|   | 조치 위반과 관련된 물품으로     |
|   | 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     |
|   | 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몰     |
|   | <u>수한다.</u>         |
| 제 | 26조(벌칙) ①           |
|   | <u>3</u>            |
|   | <u>년1억원</u>         |
|   |                     |
|   | ② 제1항에 따른 매점매석 행    |
|   | 위 금지의 위반과 관련된 물품    |
|   | 으로서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
|   |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
|   |                     |

<신 설>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u> 몰수한다.

- 제26조의2(몰수물품의 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몰수한 물품(이하 "몰수물품"이라 한다)
  을 매각·공매·기부 또는 소각하
  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물품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매각·공매
  대금에서 매각·공매 비용을 뺀
  -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물품의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